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747-333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10.(금)	'26.05.28.(목)	'26.06.02.(화)	'26.06.08.(월)	'26.06.10.(수)	'26.06.11.(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28.(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2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8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6.02.(화)	'26.06.08.(월)	'26.06.10.(수)	'26.06.11.(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24번지) ■ 문의 : 055)747-3330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상남도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재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에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잔금 납부금액이 총 분양가의 10%미만일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매수인은 총 공급금액의 10% 이상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와는 아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부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등기 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기한 및 방법

※ 분양(전매) 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하여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06.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의무적용

※ 2023.01.01.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48번지 외 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8~29층 2개동 총 261세대 중 잔여 129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25	01	084.3746A	84A	55	101	303, 403, 404, 405, 503, 504, 505, 603, 604, 605, 703, 704, 705, 803, 804, 805, 903, 905, 1003, 1104, 1204, 1205, 1403, 1404, 1505, 1703, 1704, 1705, 1905, 2003, 2103, 2205, 2303, 2304, 2403, 2404, 2405, 2605
					102	404, 504, 604, 704, 804, 904, 1504, 1604, 1804, 2004, 2104, 2204, 2304, 2504, 2604, 2704, 2804
	02	105.9633A	105A	59	1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201, 1401, 1501, 1601, 1701, 1801, 2201, 2301, 2501, 2701, 2801, 2901
					102	301, 401, 403, 501, 503, 601, 603, 703, 801, 803, 903, 1003, 1101, 1103, 1201, 1203, 1303, 1401, 1403, 1503, 1601, 1603, 1701, 1703, 1803, 1903, 2001, 2003, 2101, 2201, 2203, 2301, 2303, 2403, 2503, 2601, 2603, 2703, 2803, 2901
	03	105.6430B	105B	12	101	402, 502, 602, 702, 802, 902, 1002, 1102, 1402, 1502, 2002, 2202
	04	105.5065C	105C	3	102	502, 602, 902
	합 계			129	-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 VAT포함)

주택형 (약식)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1-15	2027-06-15	2028-01-15	2028-09-15	2029-03-15	2029-09-15	
84A	101동 3호	3층	1	117,536,795	486,463,205	-	604,000,000	10,000,000	20,2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211,400,000
		4~5층	2	118,898,977	492,101,023	-	611,000,000	10,000,000	2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6~10층	5	120,261,158	497,738,842	-	618,000,000	10,000,000	20,9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216,300,000
		11~15층	1	121,623,340	503,376,660	-	625,000,000	10,000,000	21,25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218,750,000
		16~20층	2	124,347,703	514,652,297	-	639,000,000	10,000,000	2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21~25층	3	125,709,884	520,290,116	-	646,000,000	10,000,000	22,3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226,100,000
	101동 4호	4~5층	2	118,898,977	492,101,023	-	611,000,000	10,000,000	20,55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213,850,000
		6~10층	3	120,261,158	497,738,842	-	618,000,000	10,000,000	20,9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216,300,000
		11~15층	3	121,623,340	503,376,660	-	625,000,000	10,000,000	21,25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218,750,000
		16~20층	1	124,347,703	514,652,297	-	639,000,000	10,000,000	2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21~25층	2	125,709,884	520,290,116	-	646,000,000	10,000,000	22,3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226,100,000
	101동 5호	4~5층	2	117,342,198	485,657,802	-	603,000,000	10,000,000	20,15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211,050,000
		6~10층	4	118,704,380	491,295,620	-	610,000,000	10,000,000	20,5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213,500,000
		11~15층	2	120,066,561	496,933,439	-	617,000,000	10,000,000	20,85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215,950,000
		16~20층	2	122,790,924	508,209,076	-	631,000,000	10,000,000	21,55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220,850,000
		21~25층	2	124,153,105	513,846,895	-	638,000,000	10,000,000	21,9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223,300,000
		26~28층	1	125,515,287	519,484,713	-	645,000,000	10,000,000	22,25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225,750,000
	102동 4호	4~5층	2	117,342,198	485,657,802	-	603,000,000	10,000,000	20,15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211,050,000
		6~10층	4	118,704,380	491,295,620	-	610,000,000	10,000,000	20,5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213,500,000
		11~15층	1	120,066,561	496,933,439	-	617,000,000	10,000,000	20,85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215,950,000
		16~20층	3	122,790,924	508,209,076	-	631,000,000	10,000,000	21,55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220,850,000
		21~25층	4	124,153,105	513,846,895	-	638,000,000	10,000,000	21,9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223,300,000
		26~28층	3	125,515,287	519,484,713	-	645,000,000	10,000,000	22,25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225,750,000
105A	101동 1호	4~5층	2	149,296,794	617,912,005	61,791,201	829,000,000	10,000,000	31,45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290,150,000
		6~10층	5	150,917,628	624,620,338	62,462,034	838,000,000	10,000,000	31,9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93,300,000
		11~15층	3	152,358,369	630,583,301	63,058,330	846,000,000	10,000,000	32,3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96,100,000
		16~20층	3	155,600,036	643,999,967	64,399,997	864,000,000	10,000,000	33,2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302,400,000
		21~25층	3	157,040,778	649,962,929	64,996,293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26~28층	2	158,661,612	656,671,262	65,667,126	881,000,000	10,000,000	34,05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308,350,000
		29층	1	160,282,445	663,379,595	66,337,960	890,000,000	10,000,000	34,5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311,500,000
	102동 1호	3층	1	150,377,350	622,384,227	62,238,423	835,000,000	10,000,000	31,75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292,250,000
		4~5층	2	151,998,184	629,092,560	62,909,256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6~10층	2	153,438,925	635,055,523	63,505,552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1~15층	3	155,059,758	641,763,856	64,176,386	861,000,000	10,000,000	33,05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301,350,000
		16~20층	3	158,121,334	654,435,151	65,443,515	878,000,000	10,000,000	33,9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307,300,000
		21~25층	3	159,742,168	661,143,484	66,114,348	887,000,000	10,000,000	34,35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10,450,000
		26~28층	1	161,363,001	667,851,817	66,785,182	896,000,000	10,000,000	34,8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313,600,000
		29층	1	162,803,742	673,814,780	67,381,478	904,000,000	10,000,000	35,2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316,400,000

105A	102동 3호	4~5층	2	146,775,497	607,476,821	60,747,682	815,000,000	10,000,000	30,75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285,250,000
		6~10층	5	148,396,331	614,185,154	61,418,515	824,000,000	10,000,000	31,2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82,400,000	288,400,000
		11~15층	5	149,837,072	620,148,116	62,014,812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6~20층	5	153,078,740	633,564,782	63,356,478	850,000,000	10,000,000	32,5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297,500,000
		21~25층	4	154,519,481	639,527,745	63,952,774	858,000,000	10,000,000	32,9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300,300,000
		26~28층	3	156,140,314	646,236,078	64,623,608	867,000,000	10,000,000	33,35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303,450,000
105B	101동 2호	4~5층	2	150,197,257	621,638,857	62,163,886	834,000,000	10,000,000	31,7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291,900,000
		6~10층	5	151,637,999	627,601,819	62,760,182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11~15층	3	153,258,833	634,310,152	63,431,015	851,000,000	10,000,000	32,55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297,850,000
		16~20층	1	156,320,407	646,981,448	64,698,145	868,000,000	10,000,000	33,4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86,800,000	303,800,000
		21~25층	1	157,941,241	653,689,781	65,368,978	877,000,000	10,000,000	33,85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87,700,000	306,950,000
105C	102동 2호	4~5층	1	153,258,833	634,310,152	63,431,015	851,000,000	10,000,000	32,55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297,850,000
		6~10층	2	154,879,666	641,018,485	64,101,849	860,000,000	10,000,000	33,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86,000,000	301,000,000

- 공급금액(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 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기관과 관련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 신용 보증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선납 할인율 및 지연 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 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08.(월) ~ 2026.06.17.(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0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기간 내 진행될 예정이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 내 방문하시어 당첨자 서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접수 기간	장소
당첨자 서류접수	2026. 06. 10.(수) (10:00~16:00)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건본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24번지)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분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분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 06. 11.(목) (10:00~16:00)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견본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24번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분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부동산 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가 50%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및 수입인지 배부 예정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 접수 장소에 비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대리 계약 시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 - 035 - 682767	신한자산신탁(주)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6-11-15	입주지정일	
84A	24,000,000	2,400,000	2,400,000	19,200,000	
84B	24,000,000	2,400,000	2,400,000	19,200,000	
105A	30,000,000	3,000,000	3,000,000	24,000,000	
105B	30,000,000	3,000,000	3,000,000	24,000,000	
105C	30,000,000	3,000,000	3,000,000	24,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 - 038 - 570937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중도금,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501호 홍길동 → 10105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설치수량 및 위치	공급금액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형)
84A	3실(거실, 주방, 침실1)	5,850,000	6,640,000
	5실(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210,000	9,530,000
84B	3실(거실, 주방, 침실1)	5,850,000	6,640,000
	5실(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210,000	9,530,000
105A	3실(거실, 주방, 침실1)	6,380,000	7,180,000
	5실(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970,000	10,290,000
105B	3실(거실, 주방, 침실1)	6,380,000	7,180,000
	5실(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970,000	10,290,000
105C	3실(거실, 주방, 침실1)	6,380,000	7,180,000
	5실(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970,000	10,290,000

※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안방의 벽걸이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신형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드레인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드레인 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및 Hi-oT와 에어컨 연동은 유상옵션 선택 시에 한하며, 천장형 또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개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연동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은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에만 가능합니다.

2. 현관/복도 마감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공급금액			
	현관중문 (3연동)+에어브러쉬(신발장내부)+현관/복도 시트판넬			
	수납특화 선택	수납특화 미선택	가구 디자인특화 선택	가구 디자인특화 미선택
84A	3,020,000	3,410,000	-	-
84B	-	3,450,000	-	-
105A	3,520,000	3,790,000	-	-
105B	-	-	2,460,000	2,860,000
105C	-	-	2,640,000	2,850,000

3. 기타부위 마감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공급금액		
	욕실특화	거실마감	주방마감
	타일·샤워부스 상향, E-Stone(젠다이벽, 욕조측판, 세면대벽), 도기·수전&ACC·샤워기 상향	아트월 타일 → 세라믹 T	주방 상판/벽 세라믹 T
84A	6,480,000	5,800,000	3,060,000
84B	6,480,000	4,840,000	3,620,000
105A	6,710,000	6,320,000	3,270,000
105B	6,690,000	5,480,000	3,860,000
105C	6,690,000	5,480,000	3,870,000

4. 가구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공급금액					
	가구 디자인 특화		냉장고장 특화	침실2 수납 특화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주방상부장 (유리플랩/여닫이+조명), 주방벽·상판 세라믹T, 수전 특화	주방상부장 (유리플랩+조명), 주방벽·상판 세라믹T, 수전특화 , 복도장식장, 주방우물천 장			3연동 도어 + 흑니켈 채널 / 벽판넬 / 조명형 시스템가구	슬라이딩 도어(양개형) + 흑니켈 채널 / 벽판넬 / 조명형 시스템가구 + 흑니켈 포스트 시스템가구
84A	5,180,000	-	7,170,000	5,930,000	1,980,000	-
84B	6,020,000	-	7,110,000	-	-	4,880,000
105A	6,170,000	-	6,630,000	6,470,000	1,690,000	-
105B	-	16,520,000	6,570,000	-	-	4,360,000
105C	-	16,520,000	6,630,000	-	-	4,890,000

※ 수납특화(침실2, 복도) 105A타입은 복도 펜트리 포함입니다.

※ 침실1 드레스룸 특화 84B타입은 (가구도어 + 포스트/조명형 시스템 가구) 포함이며, 105B, 105C타입은 (펜트리 가구도어+시스템선반) 포함입니다.

※ 타입별 복도 장식장의 형태는 상이합니다. (84A, 105A, 105B, 105C)

5. 가전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공급금액			
	쿡탑	기능성 오븐	스위치 조명 특화	현관 월패드
	3구 인덕션 쿡탑	전기 오븐	1) 10->13인치 대화면 월패드 2)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추가(디밍/색온도 제외) 3) 거실, 주방(아일랜드 제외), 침실: 메인등 고급화 + 디밍, 색온도 조절 + AI음성인식기능	7인치+4인치 터치 미니 월패드
84A	370,000	510,000	5,950,000	1,300,000
84B	370,000	510,000	5,370,000	1,300,000
105A	370,000	510,000	6,040,000	1,300,000
105B	370,000	510,000	5,420,000	1,300,000
105C	370,000	510,000	5,380,000	1,30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가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품목 및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 구성 및 적용범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추가 선택품목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 및 설치의 특성 상 발코니 확장 선택 및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신한은행	100 - 038 - 570781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501호 홍길동 → 10105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회사명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씨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7714929	110111-215301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3층 302호(서초동, 일광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24번지				
	현장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48번지 외 4필지				
	운영 시간	10:00 ~ 18:00				
	분양 문의	055 - 747 - 3330				
	무순위(사후) 주요 일정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26.05.28.(목)	'26.06.02.(화)	'26.06.08.(월)	'26.06.10.(수)	'26.06.11.(목)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www.힐스테이트평거.kr)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